Ⅱ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 현황

○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일본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완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봄

1. 2019년

○ 일본 금융청은 정보은행업·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자금결제 등 개정법안'[3]을 2019년 5월에 제정함

- 동법에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핀테크 소유 규제완화와 부수업무 조문에 '보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였음
- 동법을 준용하기 위해 은행법 및 보험업법이 2019년 5월에 동시에 개정되었으며,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범위에 추가로 '정보은행업무'를 신설함[4]

- 일본의 정보은행사업은 근거법 없이 2018년부터 시행되다가 2019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정보은행업무'는 고객에게 취득한 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와 보험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함
  - 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승낙한 개인은 정보제공의 대가로써 직·간접적인 편익을 받을 수 있음

3) 『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伴う金融取引の多様化に対応するための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4)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 제14호를 신설함

나. 자회사 업종 확대 및 출자 완화

○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추가로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를 신설함[5)6)]

- '보험업 고도화(高度化) 등 회사'는 ICT와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① 해당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보험업 고도화, ② 해당 보험회사 이용자 편의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함[7)]
  - ICT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상품·서비스를 효율화시킬 수 있거나 이용자 편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함
  - 'ICT와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한 업무'는 핀테크, 인슈어테크, ICT 등을 의미함
  - '보험업 고도화나 이용자 편의 업무'는 예컨대 생명·건강보험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 회사, 손해보험사업 고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회사 등의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Ⅱ-1〉 2019년 자회사 업무 확대 관련 보험업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 제1항(보험회사 자회사 범위) 1~13(생략)	제106조 제1항(보험회사 자회사 범위) 1~12(생략) 13의 2(신설)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고도화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

○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에 대한 의결권 10% 초과 출자를 허용함

- 개정 전 보험업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와 합산하여 타 회사의 의결권 10% 초과 소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의결권 10% 룰'[8)]이 존재하였음
- 개정 후 보험업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를 자회사로 할

5) 보험업법 제106조 제4항에 의거 금융당국의 사전 인구가 요구됨

6) 보험업법 제106조(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등) 제1항 제13의 2 신설됨

7)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는 은행법의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를 준용한 개념으로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8조의 2에서 용어를 명시함

8) 은행은 은행법 개정 전 '의결권 5% 룰'이 존재하였음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인가를 요건으로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합산하여 의결권을 10%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음[9]

- 일본 보험업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합산하여 타 회사의 의결권 50%를 초과 보유할 경우 자회사 규제가 적용됨[10]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그 자회사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을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결권의 50%까지 자회사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초기에 소규모 출자 시 의결권 10%를 초과하여 자회사로 규제될 투자 제약이 존재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됨

- 이에 따라 일본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는 국내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핀테크·인슈어테크 등의 스타트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러한 배경하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이이치생명이 2022년에 영국의 인슈어테크 기업 'Yulife'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2. 2021년

○ 일본 금융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보험업법 등을 일괄 개정하는 '금융기능 안정·강화 법률'[11]을 2021년 5월에 제정함

• 주요 배경은 명목적으로 정부의 지방 활성화와 디지털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의 등장에 대비하여 금융업을 뛰어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회사의 수익원 창출에 있음

• 이와 동시에 은행법 및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9) 은행법(2016년)을 준용함

10) "자회사란 보험회사 및 그 자회사가 그 전체 의결권의 50/100을 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2항)"

11)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よる社会経済情勢の変化に対応して金融の機能の強化及び安定の確保を図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가.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①지역활성화, ②산업 생산성 향상, ③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비금융업종을 신설함[12)]

- 상기 3개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13)]

  ① 경영상담 등 컨설팅업무[14)]
  ② 근로자 파견업무(보험회사의 인력 파견, IT 직종 파견 관련)
  ③ IT 등을 활용한 시스템 설계·개발·판매업무
  ④ 데이터 분석업무, 광고·조사업무, 마케팅업무[15)]
  ⑤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이용자 방문서비스 등의 업무[16)]

- 상기 업무는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계약자를 포함하여 잠재적 이용자나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즉, 3개 목적성 요건을 갖춘 비금융업의 경우 보험회사 고유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넘어서 이용자 등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17)]

---

12)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 제15호를 신설함

13) 개정 전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기타의 부수업무'에 거래고객에 국한된 컨설팅, 비즈니스 매칭 업무가 명시되었으나 개정 후 동 업무가 감독규정에서 삭제되어 컨설팅업무의 경우 거래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광고업무도 개정 전에는 '기타의 부수업무'로 분류되어 보험사업 관련 광고 등 극히 제한된 광고 행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 이러한 제한이 해제됨(金融庁(2021. 11 .10), "施行規則に関する「コメントの概要及びコ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監督指針に関する「コメントの概要及びコ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

14) 보험회사는 법 개정 전부터 기타 부수업무로 컨설팅업무, 비즈니스 매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거래처 기업에 대해서'라는 제한이 있었음.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다른 사업자 등'에 대하여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업자 등'은 거래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업무가 예시부수업무가 되면서 개정 감독지침에서 컨설팅업무 및 비즈니스 매칭업무가 기타 부수업무의 예에서 삭제됨. 또한 ①에 포함되는 업무는 개정 이전까지 허용되었던 거래처 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나 비즈니스 매칭업무에 그치지 않고 DT 지원에 기여하는 정보제공 등도 포함함

15)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다른 사업자의 광고를 하는 것은 보험사업에 관한 광고나 장표의 여백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기타 부수업무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 의해 보험회사가 광고선전업을 실시하는 것이 정면으로 인정됨

16) 이용자는 보험계약자와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하며, 방문서비스는 방문·전화·Web 회의를 포함함

17) '그 밖의 부수업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감독지침)은 은행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음; ①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 중 '각호 열거업무'에 준하는지 여부, ② 규모가 고유업무의 규모에 비하여 과대한지 여부, ③ 보험업무와의 기능적인 친근성이나 리스크의 동질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보험회사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정당하게 발생한 잉여능력의 활용에 이바지하는지 여부임

- 특히, ‘IT 등을 활용한 시스템 설계·개발·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경우 보험업 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한 것으로 금융청이 유권해석하고 있음[18)]
- 다만, 부수업무의 법적 요건인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개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함
  - 예컨대, 광고업무의 경우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기업을 대상으로 한 SNS·App·배너를 활용한 광고 행위나, IT업무의 경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DT(Digital Transformation) 제공업무도 가능함

나. 자회사 업종 확대 및 규제 완화

○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2019년 개정법의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 목적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함[19)]

-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를 종전의 ①ICT 및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한 당해 보험회사가 행하는 보험업의 고도화 또는 ②해당 보험회사 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에 더하여,[20)] ③지역활성화, ④산업 생산성 향상, ⑤기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나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함

〈표 Ⅱ-2〉 2021년 자회사 업무 확대 관련 보험업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106조 제1항(보험회사 자회사 범위) 1~12(생략) 13의 2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고도화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	제106조 제1항(보험회사 자회사 범위) 1~14(생략) 16(신설) 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고도화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

18) 금융청이 시행규칙 및 감독지침 유권해석을 발표함(金融庁(2021. 11. 10), “施行規則に関する「コメントの概要及びコ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監督指針に関する「コメントの概要及びコメントに対する金融庁の考え方”)

19)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6호를 신설함

20) 「이용자 편의에 기여하는 업무」로써 은행법의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전자쇼핑몰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金融庁, “中小・地域金融機関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Ⅲ4-7-4)에 의거 기타쿠니은행(北國銀行)이 자회사인 전자쇼핑몰 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있음)

○ 보험회사 자회사인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에 다음과 같은 비금융 업종을 추가함[21)]

① 핀테크(인슈어테크 및 스타트업 포함, 2019년 개정 내용)
② 지역 상사(商事)
③ 등록형 인재 파견
④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판매 등
⑤ 광고·선전
⑥ ATM 관리
⑦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등의 사무지원 등
⑧ 상기 ①~⑦에 관해 필요한 업무로서 자회사 대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⑨ 상기 ①~⑧에 부대하는 업무 등을 열거함

○ 개정 보험업법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를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22)]로 용어를 개편함

- 즉,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는 해외 사업을 제외한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로 정의하고, 해외에서 영업할 경우 '타업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로 구분함
- '일정한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자회사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함[23)]

○ 지역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상장 기업을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24)]

- 사업재생계획의 작성에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가 관여하고 있는 회사
-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조합원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에서 출자 받고 있는 회사
-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에 출자해 해당 주식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에서 출자를 받고 있는 회사

---

21)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6호를 신설함
2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8조의 3에서 용어를 명시함
23)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7조의 3 신설함
24)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5호를 신설함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관공서와 상공회의소 등 변호사와 컨설팅회사 등이 관여하여 책정한 사업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

○ 종속업무 자회사와 모회사 간 '매출 의존도 규제'를 폐지함

- 동 규제는 개정 전 보험업법 제11항에 따라 종속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의 매출에서 모회사(관계 자회사 포함)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제임[25)]
- 종속업무는 보험회사가 업무 아웃소싱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자회사로 주로 보험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함
- 일본 보험업법에서는 종속업무 자회사에서 차지하는 모회사의 매출 비중이 50% 하회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으나, 그동안 일본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제기와 금융당국의 금융업의 기능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회사의 종속업무 자회사의 '매출의존도 규제'가 폐지됨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종속업무를 영위하는 복리후생사업, 물품 구입·관리, 자동차 운행·보수·점검업 조사·정보제공업, 직업소개사업, 컴퓨터에 관한 사업 등 총 24개 업종의 자회사를 통해 모-자 회사 간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이 가능하게 되었음

○ 해외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 인수 규제를 완화함

- 개정 보험업법 10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업종과 관계없이 현지 금융·비금융회사를 10년간 보유 가능해짐
- 추가로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와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청 장관이 승인할 경우 업무 범위 규제와 관계없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음[26)]

○ 보험지주회사에 그룹 내 공통 및 중복업무를 인정함

-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경영관리만 할 수 있는데, 은행지주회사에 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에 집약할 수 있는 그룹 내 공통 및 중복업무가 인정되고 있었음

---

25) 安居孝啓(2016)

26) 보험업법 제106조 제8항 및 제9항 관련임

• 이번 개정에 의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공통 및 중복업무를 인정하며, 인정되는 공통 및 중복업무는 다음과 같음

-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 M&A 등과 관련된 업무, 여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심사, 시스템, 프로그램의 설계, 보수 등, 부동산의 임대, 부동산 부대시설의 관리, 임직원의 복리후생 사무, 사무용품의 구입 및 관리, 서류 인쇄, 제본 업무, 기계류 기타 물건의 대여, 고객의 경영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고객의 재산형성에 관해 상담에 응하는 업무, 광고, 선전, 조사, 분석, 정보제공, 보험회사의 고유업무 또는 부수업무와 관련된 상품의 개발, 사무와 관련된 계산, 서류 작성·보관·발송 등, 고객과의 사무 중개,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전술한 내용에 부대하는 업무

〈표 Ⅱ-3〉 일본 보험회사 업무범위 규제완화

구분	주요 내용
2019년 규제개혁	1. 비금융 부수업무에 '정보은행업무' 추가 2. 비금융 자회사 업종 추가: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 신설 3.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에 대한 의결권 10% 규제 폐지
2021년 규제개혁	1. 비금융 부수업무: 목적성 요건 3개 추가 2. 비금융 자회사 업종 추가: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의 목적성 요건 3개 추가 3. '보험업 고도화 등 회사'에 대한 수입의존도 규제 폐지 4. 외국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 인수 규제 완화 5. 보험지주회사 그룹 내 공통·중복 업무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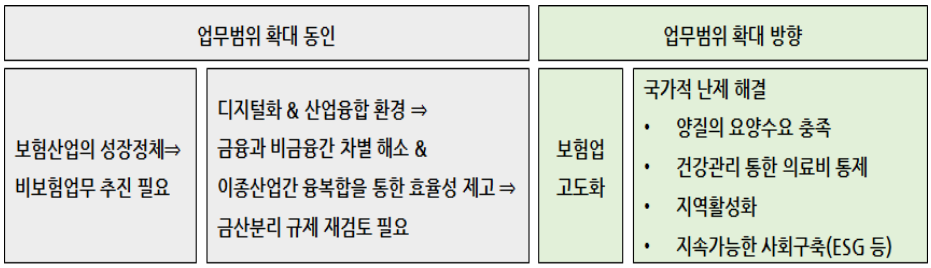
〈그림 Ⅱ-1〉 일본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동인 및 방향